

측정대행업 등록 항목

글로벌이엔텍 주식회사 2024.11.19 기준

순번	수질	대기
1	수소이온농도	매연
2	부유물질	황산화물
3	온도	암모니아
4	냄새	비소화합물
5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아연화합물
6	용존산소	크롬화합물
7	전기전도도	카드뮴화합물
8	탁도	니켈화합물
9	화학적산소요구량	납화합물
10	총대장균군	구리화합물
11	노르말핵산	이황화탄소
12	불소화합물	플루오린화합물
13	시안	질소산화물
14	암모니아성 질소	황화수소
15	염소이온	페놀화합물
16	음이온계면활성제	폼알데하이드
17	총인	브로민화합물
18	총질소	염소 및 그 화합물
19	페놀류	베릴륨화합물
20	구리	사이안화수소
21	납	수은화합물
22	니켈	다이클로로메테인
23	망간	트라이클로로에틸렌
24	바륨	염화비닐
25	비소	클로로폼
26	셀레늄	에틸벤젠
27	수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8	아연	사염화탄소
29	안티몬	벤젠
30	주석	먼지
31	철	스티이렌
32	카드뮴	아닐린
33	크롬	총탄화수소
34	6가크롬	일산화탄소
35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1,2-다이클로로에테인

순번	수질	대기
36	유기인	1,3-뷰타다이엔
37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아크릴로나이트릴
38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로필렌옥사이드
39	1,4-다이옥산	에틸렌옥사이드
40	염화비닐	아세트알데하이드
41	아크릴로니트릴	*이황화메틸 추가 예정
42	브로모포름	
43	1,1-다이클로로에틸렌	
44	다이클로로메탄	
45	클로로폼	
46	1,1,1-트리클로로에테인	
47	1,2-다이클로로에테인	
48	벤젠	
49	사염화탄소	
50	트리클로로에틸렌	
51	톨루엔	
5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3	에틸벤젠	
54	폼알데하이드	
55	헥사클로로벤젠	
56	나프탈렌	
57	아크릴아미드	
58	스타이렌	
59	페놀	
60	펜타클로로페놀	
61	에피클로로하이드린	
62	총유기탄소	
63	색도	
64	클로로필a	
65	아질산성질소	
66	질산성질소	
67	인산염인	
68	생태독성	
69	잔류염소	
70	자일렌	

글로벌이엔텍(주)

Global Environmental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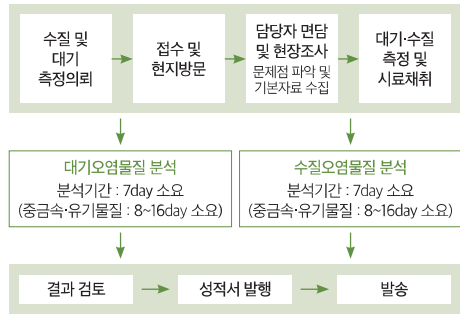
자가측정대행 (대기, 수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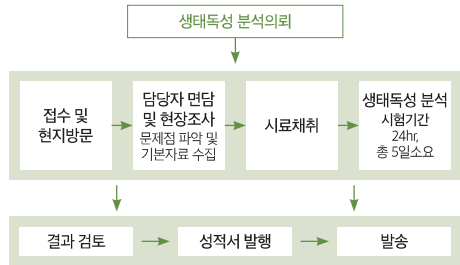
개요

측정/분석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기술인력과 측정장비 및 실험설비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가측정 대행업무 진행절차



생태독성 분석 업무 절차



?!

생태독성 관리제도란?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산업폐수에 들어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일일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 따라서 하폐수를 통해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을 생물체를 이용하여 관리해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도입

※생태독성이란 실험생물 물벼룩에게 미치는 독성정도를 TU(Toxic Unit)라는 단위로 표현

대기오염 물질 측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대행
- 각종 산업체 및 공공기관 대기 자가측정 대행
- 대공정별 대기오염물질 측정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자가측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구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 자동전송 하지않는 사업장	관제센터 자동전송, 굴뚝자동 측정기 미설치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관제센터 자동전송, 굴뚝자동 측정기 미설치 (방지시설 전·후단 측정)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제3~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해당 오염물질에 대해 월 2회 이상 자가측정 대상

수질오염 물질 측정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대행
- 각종 산업체 수질 자가측정 대행, 오수 및 하천수 등의 수질분석
- 폐수처리효율 실험(Pilot-Test)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제44조 제2항관련)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³ 이상인 사업장	권고규정으로 측정주기 및 횟수를 특정하지 않음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m³ 이상, 2,000m³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m³ 이상, 700m³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m³ 이상, 200m³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및 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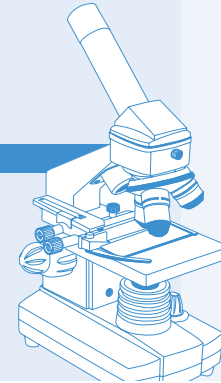


수질분야

- 원, 폐수 분석
- 처리수분석
- 용수 분석
- 폐수처리 효율 실험(Pilot-Test)
- 생태독성
- 매립장 침출수 분석
- 비점오염원분석

대기분야

- 오염물질 측정, 분석
- 방지시설 효율 측정
-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
- 매립장 가스 측정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등 환경·기술 전문 기업

현대 사회의 지구 환경 오염 문제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협하고 있으며, 환경 보전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적 진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글로벌이엔텍(주)는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등 환경 기술 전문기업”을 목표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최첨단 분석 장비를 통한 정확한 측정·분석으로 환경 기술에 관한 최고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이엔텍 주식회사는 환경 기술을 통하여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좋은 공동체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 본질을 지켜 나가는 것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